

## 겸임교수임용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겸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다른 기관에 전속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구비한 자는 겸임교수에 임용할 수 있다.

1. 특수전문분야에서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

**제3조(임용절차 및 기간)** ①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  
(개정 2015.06.16.)

1. 각 대학(원)장 추천 (신설 2015.06.16.)
2. 총장의 제청 (신설 2015.06.16.)
3. 이사장이 임용 (신설 2015.06.16.)

②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보수)** 겸임교수의 보수는 (별표)에 의거하여 상여금 없이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임무)** ①겸임교수는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강의 이상을 하여야 한다.

②재직기간중에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본 대학교 겸임교수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임용서류)**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
2. 이력서 1통
3. 재직증명서 1통
4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5. 경력증명서 각 1통
6. 주민등록등본 1통
7. 교원인사기록카드

**제7조(임용세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3-2-9~2 제3편 행 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겸임교수봉급표

직 급	봉 급 액	비 고
겸임교수		